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검 토 보 고

〈학교민주시민교육 법적 기반 마련〉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8418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4
2.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입법·정책 및 논의 현황	6
3. 총괄 검토	11
4. 조문별 검토	17
가. 목적(안 제1조)	17
나. 정의(안 제2조)	19
다.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안 제5조) 및 내용(안 제6조)	25
라.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추진체계(안 제7조~제11조)	34
마.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운영(안 제12조)	40
바. 교원의 연수(안 제13조)	45
사. 부칙	4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고민정의원 등 15인
2. 발 의 일 : 2026. 4. 17.
3. 회 부 일 : 2026. 4.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임을 「대한민국헌법」에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었듯이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어 필요가 있음.

사회적 갈등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이러한 교육은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나, 현재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이

행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등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자율적이고 중립적인 토의·토론 수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의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헌법적 가치 존중 및 토의·토론 진흥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특정 견해의 강압적 주입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실시되도록 함(안 제5조).

라.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자유와 책임,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 등의 내용을 포함함(안 제6조).

마.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시·도 교육청의 연도별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둠(안 제11조).

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 및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함(안 제12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 제정안의 제명은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으로, 본칙 13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민주시민교육을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원리를 토대로 사회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대화와 참여를 통하여 공동의 해결을 모색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그 적용대상인 학교에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 및 한국학교를 포함하고 있음(안 제2조).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헌법적 가치의 존중, 학생의 자율적 판단 및 다양한 관점의 균형 등을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정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가치, 권리와 의무, 자유와 책임, 국가기관 및 시민참여 등을 주요 교육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셋째, 교육부장관이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이 연도

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음(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넷째, 학교장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대학 및 교원양성기관이 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조문 체계>

본칙	
제1조 목적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2조 정의	제9조 계획수립 등의 협조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조 공청회 등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제5조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제12조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운영
제6조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제13조 교원의 연수 등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부칙
	시행일

2.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입법·정책 및 논의 현황

□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하려는 논의¹⁾는 상당 기간 지속되어 왔음.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민주시민교육 실시방안을 검토하고, 1996년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에서도 민주시민교육 전담기구 설치 등을 제안하였으며, 1997년에는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음. 이후에도 관련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었으나 법률 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음.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680호),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100호)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학교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각 영역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도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임.

< 제22대 국회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 >

발의 의원	의안번호	의안명	계류현황
김문수 의원	2208680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상정 (25.6.11.)
강경숙 의원	2210100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상정 (25.6.11.)

※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사회 각 영역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한병도 의원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제2200850호) 및 신정훈 의원의 「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안」(제2205842호)이 계류 중임.

1) 조례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경제와 사회, 2025.8.)

□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조례를 통한 제도화가 확산되었음.

2015년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 제정 이후 다수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대전·울산에서는 2023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별도 조례의 필요성 등에 관한 논의를 거쳐 관련 조례가 폐지²⁾되는 등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뿐 아니라 그 내용·방법과 제도화 방식에 대해서는 그간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왔음.

한편, 다수의 시·도교육청 조례에서도 헌법적 가치의 존중, 가치 주입 금지, 자유로운 토론 등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범위와 교육내용 및 추진체계 등은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남³⁾.

□ 한편, 현행 국가교육과정에도 민주시민교육이 반영되어 있음.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교육의 목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

2) 관련 조례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도는 대전, 울산, 대구 3개 지역으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21년 12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나, 2023년 2월 대전시의회가 해당 조례가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의 조례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였음.

울산광역시 역시 2020년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지만 2023년 7월 대전광역시와 유사한 사유로 조례가 폐지된 바 있음.

3) 시·도별 조례는 적용대상과 교육내용 및 추진체계에서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조례와 전라남도교육청 조례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교육내용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조례는 정당·선거·투표 등 참정권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명시하고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선거교육, 민주화운동의 역사 및 보훈의 가치 등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 시·도별로 포함 항목과 구체화 정도에 차이가 있음.

추진체계의 경우에도 경기도교육청 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반면, 전라남도교육청 조례는 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는 기존 정책자문위원회 체계의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제시하고,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에도 다양성 존중, 협력적 소통 및 공동체에 대한 책임 있는 참여 등을 반영하고 있음. 또한 '민주시민 교육'을 범교과 학습주제로 정하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서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헌법과 기본권, 선거와 정치과정, 국가기관, 지방자치와 시민참여 등을 다루도록 하고 있으며, 토의·토론, 모의재판·모의국회, 사회참여 활동 등을 통해 학생의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 및 참여 역량을 기르도록 하고 있음.

< 2022개정 교육과정 총론 중 민주시민교육 부분 일부 >

1.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및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의 목적 및 이념]

우리나라의 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구하는 인간상]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국가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구성한다. 비판적조사·분석·평가 등 탐구 과정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며, 타인 및 환경과의 소통·협력·공감을 바탕으로 민주 시민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한다.

2.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 사항 (범교과 학습 주제)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등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3. 학교급별 교육 목표

[초등학교 교육 목표]

자신과 이웃, 상호 의존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규범과 태도를 갖춘다.

[중학교 교육 목표]

자신과 세계에 대한 유연한 태도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 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고등학교 교육 목표]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4.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및 내용 - 자율·자치 활동

자율·자치 활동은 학생 주도의 학급·학교 공동체 활동, 자치 활동, 민주 시민적 정체성 형성활동, 자기 주도적 탐구 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학생 주도 자치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문제해결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절차를 체득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내면화하도록 한다.

□ 정부 차원에서도 민주시민교육 관련 정책은 계속 추진되어 왔음.

교육부는 2018년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하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조직과 지원 규모 등에 변동이 있었으나, 2025년 말 전담조직을 다시 설치하고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통하여 헌법·선거교육, 토의·토론 수업, 교원 연수 및 학생자치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

□ 참고로, 외국의 시민교육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⁴⁾에서는 1976년 ‘보이텔스바흐 합의⁵⁾’를 통해 강압적 주입 금지, 논쟁성의 원칙 및 학생의 독자적 판단능력 함양 등을 정치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였으며, 영국⁶⁾에서는 1998년 ‘크릭 보고서⁷⁾’를 통해 사회·도덕적 책임성, 공동체 참여 및 정치적 문해력을 시민교육의 주요 요소로 제시하고 이를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토의 참고자료에서는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시민교육의 방법적 원칙을, 크릭 보고서가 시민교육의 내용적 요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서로 보완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음.

4)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가능성과 헌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헌법재판연구원, 2020)

5)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1976년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보이텔스바흐에서 정치교육 학자와 실무자들이 논의를 거쳐 정리한 원칙으로, 강압적 주입 금지, 논쟁성의 원칙, 학생의 자율적 판단능력 함양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치·사회적 쟁점을 교육에서 배제하지 않되 특정 견해를 일방적으로 주입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6) 학교시민교육 쉽게 알아보기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학습자료, 2026)

7) 크릭 보고서는 1998년 영국 정부의 시민교육 자문그룹이 작성한 보고서로, 시민교육의 주요 내용과 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후 잉글랜드 중등학교에서 시민교육이 국가교육과정의 법정 교과로 도입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3. 총괄 검토

□ 제정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설치, 학교별 교육계획 및 교원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인 실시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한민국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여 민주주의를 그 핵심적 원리이자 기본질서로 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2조⁸⁾는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한편,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4항⁹⁾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6조도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8)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한다는 교육목적을 실현하되, 그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함께 보장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최근 정치·사회적 갈등과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학생이 다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서로 다른 견해를 존중하면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음.

교육부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헌법·선거교육,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토의·토론 및 학생자치 등을 포함하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제정안은 현재 국가교육과정과 시·도별 정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공통적인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위원회 등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지속성을 높이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음.

특히 헌법적 가치의 존중, 학생의 자율적 판단, 다양한 관점의 균형 등을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이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운영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보완하고, 교육내용과 운영에 관한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¹⁰⁾.

또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해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연계하고, 교원 연수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민주시민교육 정책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됨.

□ 다만, 「교육기본법」과 국가교육과정에서 이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민주시민교육을 교육목표 및 범교과 학습주제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법률을 통한 제도화의 필요성과 규율 범위에 대해서도 견해가 나뉠 수 있음.

한편,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범위 및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만큼, 법률에서 어떠한 내용을 공통적인 교육내용으로 정할 것인지, 정치·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룰 것인지,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을 국가교육과정 및 학교·교원의 자율성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의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 심의

10) 교육부는 14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에 공통적으로 반영된 사항으로 헌법 계승, 사적 이해관계 및 특정 정치적 의견 관철을 위한 이용 금지, 가치 주입 금지, 자유로운 토론, 보편적 접근 및 자발적 참여 등을 제시하고 있음(교육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 2026. 1.).

과정에서도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¹¹⁾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과 교원의 자율성 간 관계, 논쟁적 사안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¹²⁾이 제기된 바 있음.

- 따라서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①별도 법률을 통한 제도화의 필요성과 규율 범위, ②정치·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특정 견해의 일방적 제시를 방지하고 학생의 자율적 판단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원칙, ③법률에서 정할 교육내용의 범위와 국가교육과정을 통한 탄력적 운영 간의 관계, ④학교민주시민교육을 ‘모든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범위와 학교·교원의 교육과정 및 수업 자율성 간의 관계, 기본원칙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범위와 방법, ⑤유치원·대학·한국학교 등을 포함하는 적용범위, 시행계획의 의견수렴 방식과 별도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학교별 계획 수립 등에 따른 행정부담 등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1)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 제12조(명확성과 논쟁성) ① 제2장의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국가교육과정 등에 따라 명확하게 교육한다.

② 제1항의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 중 그 구체적 적용·입법·정책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논쟁성 자체를 학습의 기회로 삼는다.

12) "서논술형 시기상조"·"답정너 공론화"…국교위 내부도 반발(연합, 2026.8.)

< 제정안의 주요 검토사항 >

구분	주요 검토사항
법제화의 필요성 (제정안 전반)	민주시민교육의 안정적·지속적 추진 및 지역 간 편차 완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이미 「교육기본법」 및 국가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어 별도 법률은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
정치적 중립성과 논쟁적 사안의 교육 (제5조제3항·제4항)	정치·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을 교육에서 다룰 필요가 있으나, 특정 견해의 일방적 제시나 주입으로 이어질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다양한 관점과 근거를 균형 있게 제시하고 학생의 자율적 판단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원칙을 적절히 설정할 필요
국가교육과정과의 관계 (제5조제2항, 제6조, 제12조제1항)	법률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적인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여 교육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은 국가교육과정을 통해 학교급·교과별 특성과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
학교·교원의 자율성 및 보호 (제5조제2항·제5항)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모든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이 학교·교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교원이 기본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한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
적용범위 ·추진체계 (제2조, 제7조~제12조)	유치원·대학·한국학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 유아의 발달단계, 대학의 교육과정 자율성, 한국학교의 소재국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또한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별도 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체계성을 높일 수 있으나, 별도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의견수렴 방식, 학교별 계획 수립에 따른 행정부담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

□ 관계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제정 취지에 동의함.

다만, 일부 시·도교육청¹³⁾ 및 교원단체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화할 경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나 학교 현장

13)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의 갈등이 확대될 수 있고, 이미 현행 법령 및 국가교육과정에서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 법률 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으며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과 교원의 수업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거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는 정치적 오해를 줄이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시민교육’으로 변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기보다는 기존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일부 시·도교육청 및 교원단체¹⁴⁾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다양한 관점의 보장, 교원 보호, 학교의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개별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14) 경기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4. 조문별 검토

가. 목적(안 제1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검토의견

-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이념을 규정하면서 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¹⁵⁾.
- 제정안 제1조 역시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국가와 사회

15)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현행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을 학교민주시민교육 분야에서 구체화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 및 평가체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고려하여 제정안의 ‘자질’을 ‘역량’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다만, 「교육기본법」 제2조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나. 정의(안 제2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 제2조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민주시민교육”과 “학교”,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정의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이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원리를 토대로, 개인과 공동체, 지역사회와 세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문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대화와 참여를 통해 공동의 해결을 모색하며,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존의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2) 검토의견

가. 민주시민교육의 정의

- 제정안은 “민주시민교육”을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원리를 토대로, 개인과 공동체, 지역사회와 세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문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대화와 참여를 통해 공동의 해결을 모색하며,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존의 가치를 함

양하는 교육”으로 정의한 후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교육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과 시·도 교육청 조례에서도 민주시민교육 또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음.

< 유사 법령·조례 민주시민교육 정의규정 >

학교민주시민 교육법안 (김문수의원안)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제도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며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인식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등 민주시민의식을 높여 공동체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학교시민 교육법안 (강경숙의원안)	“시민교육”이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제도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며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등 민주시민의식을 높여 공동체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민주시민 교육지원법안 (한병도의원안)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국민이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법안 (신정훈의원안)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국민이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 유사 법률안 및 조례와 비교하면, 제정안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원리를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적인 토대로 명시하는 한편, 비판적 이해와 사회참여뿐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 지역사회와 세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차별·혐오에 대한 대응 및 배려·공존의 가치까지 포함하여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비교적 폭넓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민주시민교육은 현재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청의 조례 및 정책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그 기본적인 개념과 범위를 제시할 경우 지역이나 교육주체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와 범위가 달리 이해되는 것을 줄이고, 학교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과 기준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의 정의규정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 지역사회와 세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차별과 혐오에 대한 대응, 배려와 공존 등 교육의 대상 영역과 지향 가치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비교적 폭넓은 측면이 있음.

또한, 안 제6조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제2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적인 개념과 성격을 중심으로 규정하는 등 양 조문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나. 학교의 정의

- 한편, 제정안은 “학교”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외에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과 외국의 한국학교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음. 김문수의원안과 강경숙의원안도 동일함.

이는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시·도 교육청 조례¹⁶⁾보다 적용범위를 넓게 설정한 것으로, 대학·유치원 및 한국학교를 각각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¹⁷⁾할 필요가 있음.

- 먼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 한국학교는 각각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또는 소재국의 교육환경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교육기관임.

그런데 제정안은 이들 기관을 모두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모든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안 제5조¹⁸⁾와 학교의 장이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을 계획·운영하도록 하는 안 제12조제2항¹⁹⁾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16) 현행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14개 시·도교육청 조례 중 3개 조례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나머지 11개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17) 김문수 의원안과 강경숙 의원안도 대학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면서, 학교민주시민교육(학교시민교육)을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대학의 관련 과목 개설은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18)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① 학생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하며,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19) 제12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 및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수 있음.

반면, 안 제12조제3항은 대학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과목 개설을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한국학교가 소재국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자율적으로 계획·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대학 및 한국학교에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의무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교육의 실시 방식과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인지 조문 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유치원의 경우 제정안은 학생의 발달 단계와 연령을 고려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행 시·도교육청 조례는 대부분 초·중등학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초·중등학교와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에도 차이가 있음. 경기도교육청도 유아교육이 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는 소재국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 단계부터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필요성과 유아의 발달 단계 및 유아교육과정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유치원을 법률의 적용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안 제5조) 및 내용(안 제6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 제5조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면서 교원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운영 원칙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① 학생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하며,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서로 다른 입장이나 관점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균형적으로 제공하고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다루어야 하며, 학생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④ 교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대한민국헌법」의 가치와 기본원리 존중 2. 학생의 자율적인 토의·토론 진흥 3. 민주시민으로서 학생의 실천적 역량 함양 4. 교육자료의 신뢰성 확보 및 정보 출처의 투명성 유지 5. 학생의 자율적 판단 존중 및 다양한 관점의 균형 확보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제4항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 정 안

1. 「대한민국헌법」의 내용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가치
2.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와 제도
3.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자유와 책임
4. 의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정당, 언론, 이익집단, 각종 시민단체의 성격 및 기능과 역할
5. 생태와 환경, 평화, 인권 존중, 미디어 문해 및 선거 참여 등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가치와 역량
6. 민주적 토론 및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와 실천
7. 비판적 사고를 통한 사회참여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
8. 그 밖에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실천을 위한 내용

2) 검토의견

가) 기본원칙

- 제정안 제5조의 기본원칙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이라는 제도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교육이 차별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질 것(제1항), 장기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제2항), 다양한 관점의 균형적 제공 및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다루며, 학생들이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제3항)과 제4항의 교원의 운영 원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제5항)으로 구성됨.
- 이와 함께 제4항에서는 교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헌법적 가치와 기본원리 존중(제1호), 자율적인 토의·토론 진흥(제2호), 학생의 실천적 역량 함양(제3호), 자료의 신뢰성 확보 및 정보 출처의 투명성 유지(제4호), 학생의 자율적 판단 존중 및 다양한 관점의 균형

확보(제5호)라는 운영 원칙도 함께 제시함.

- 세 법률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장기적·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서로 다른 입장이나 관점을 다루면서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를 보장하려는 점에서 기본적인 방향은 유사함.

다만, 강경숙 의원안은 김문수 의원안에 더하여 주입이나 교화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고민정 의원안은 서로 다른 입장이나 관점을 균형적으로 제공하고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음. 특히 고민정 의원안은 교원의 구체적인 수업원칙을 별도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른 교원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 비교 >

구분	김문수 의원안	강경숙 의원안	고민정 의원안
교육기회	능력·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		
지속성·교육과정	장기적으로 계획·실시하고 모든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지속 실시		
다양한 관점	서로 다른 입장·관점을 객관적으로 제공·취급	객관적으로 제공·취급 + 주입·교화 금지	서로 다른 입장·관점을 균형적으로 제공하고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다룸
학생 참여	사회문제 해결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		
교원의 수업원칙	—	—	헌법적 가치 존중, 자율적 토의·토론, 실천적 역량, 자료 신뢰성·출처 투명성, 자율적 판단·관점의 균형
교원 자율성 지원	—	—	국가·지자체가 자율적 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제정안이 헌법적 가치의 존중, 학생의 자율적 판단 및 다양한 관점의 균형 등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교원이 학생의 자율적인 토의·토론, 교육자료의 신뢰성 및 정보 출처의 투명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 것은 정치·사회적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학생이 다양한 관점과 근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통적인 교육원칙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종전 시·도 차원의 민주시민교육 운영과 관련해서도 정치·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을 특정한 관점에서 다룰 경우 편향된 정치교육으로 인식되거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²⁰⁾된 바 있는 만큼, 논쟁적인 사안을 교육에서 다루는 경우 특정한 견해를 일방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과 근거를 균형 있게 제시하여 학생의 자율적 판단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에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적 논쟁 자체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주입하는 등의 당파성을 배제하고 학생에게 다양한 견해에 접근할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²¹⁾.

참고로, 교육부가 현행 14개 시·도교육청의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헌법 계승, 특정 정치적 의견 관철을 위한 이용 금지, 가치 주입 금지, 자유로운 토론 및 자발적 참여 등이 주요 공

20) 조례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경제와사회, 2024)

21)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가능성과 헌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헌법재판연구원, 2020)

통사항으로 제시되고 있어, 제정안의 기본원칙은 기존 시·도교육청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과도 상당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음²²⁾.

- 한편, 안 제5조제2항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2022 개정 교육과정도 민주시민교육을 범교과 학습주제로 정하여 교육활동 전반에서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취지는 현행 교육과정의 방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다만,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모든 교과 및 교육활동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교과의 특성과 학교·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이 제4항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정치·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교원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나 민원 등을 우려하여 교육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정안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2)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교육부, 2026.1.)

다만, 제정안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가교육위원회 및 일부 교원단체 등이 제시한 의견과 같이 정당한 교육활동의 보호 범위와 방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과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원의 기본원칙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원 보호 내용을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²³⁾.

[제정안에 대한 관련 기관 의견제출]

<시·도교육청 의견>

○(경기)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 보장을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이 ‘모든 교육과정’에 포함된다는 원칙을 수정하고,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고려할 때 교육의 방법론을 한정할 수 없으므로, 교원의 수업 원칙 중 ‘학생의 자율적인 토의·토론 진흥’ 문구를 수정하며, 현장의 부담과 민원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교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다양한 관점을 비판적으로 탐색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원칙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교원단체 의견>

○(전교조) 교사들이 정치적 편향성 시비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교육적 안전망’ 법적으로 보장 필요

나) 내용

□ 안 제6조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23) 제5조 제6항 신설

- 학교 또는 교원이 제4항의 원칙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으로서 수업을 설계·운영한 경우, 그 행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민사상·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김문수 의원안 및 강경숙 의원안도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음.

김문수 의원안은 민주적인 생활원리와 공공재정 관련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강경숙 의원안과 고민정 의원안은 생태·평화·인권·미디어 문해 등 시민적 가치와 역량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음. 또한 고민정 의원안은 기본적 가치와 역량에 환경과 선거 참여를 추가하고, 국가기관 등의 기능과 역할에 헌법재판소를 포함하고 있음.

<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비교 >

구분	김문수 의원안	강경숙 의원안	고민정 의원안
헌법·민주주의	민주주의 기본원리·가치, 헌법		
민주주의 역사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와 제도		
권리·의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강경숙의원안은 시민)		
국가기관 등	의회, 정부, 법원, 정당, 언론, 이익집단, 시민단체		헌법재판소 추가
시민적 가치·역량	민주적인 생활원리	생태·평화·인권·미디어 리터러시	생태·환경·평화·인권·미디어 문해·선거 참여
토론·사회참여	민주적 토론·의사결정, 사회참여·책임		
기타	공공재정의 기능·운영원리	—	—

- 제정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가치, 시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 시민적 가치와 역량, 토론·사회참여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학교에서 다루어야 할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적인 범위와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 「초·중등교육법」²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범교과 학습주제로 제시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적인 내용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반면,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국가교육과정을 통하여 학교급별·교과별 특성과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규정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헌법에 기초한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하되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경기도교육청은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여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선거교육의 실천적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치를 교육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법률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규정

24)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육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성과 국가교육과정을 통한 탄력적인 교육내용의 구체화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에 대한 관련 기관 의견제출]

<시·도교육청 의견>

- (울산) 현행 내용이 포괄적이라 범위가 명확치 않은 반면, 내용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민주시민교육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헌법에 기초한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하되,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수정이 필요함.²⁵⁾
- (경기)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여 간소화가 필요함.²⁶⁾

<교원단체 의견>

- (전교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선거교육에 대한 실천적 방법론을 명시하고, 시대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가치 포함이 필요함.²⁷⁾

25) 제6조 수정

- 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가치,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자유와 책임,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를 포함하되,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정책에 대한 찬반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도록 한다.

26) 제6조 수정

- 1. 대한민국 헌법의 내용과 가치
 2.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가치, 민주주의 제도 등에 대한 이해
 3. 민주적 토론 등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 비판적 사고를 통한 사회참여 능력
 4. 생태, 평화, 인권 존중, 미디어 문해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가치와 역량
 5. 그 밖에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과 실천을 위한 내용

27) 제6조 제5호 수정

- 생태와 환경, 평화, 인권 존중, 미디어 문해, 선거 참여 및 모의투표, 차별과 혐오 대응, 다문화 이해, 노동교육 등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가치와 역량

라.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추진체계(안 제7조~제11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위원회의 구성 등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실시 계획 2.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 3.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4.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교육청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제 정 안

야 한다.

제10조(공청회 등)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방식(이하 이 조에서 “공청회등”이라 한다)으로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①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교육의 중립성과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1.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서 10년 이상 교원으로 재직하거나 교육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학교·교육행정기관,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학생의 보호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학부모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단체 및 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법조계·종교계·언론계·문화계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하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학생자치기구의 대표로서 관할 교

제 정 안
육감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검토의견

- 제정안에 따르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4년마다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안 제7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교육감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그 과정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을 수 있고(안 제9조),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안 제10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외에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교육부장관 소속의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바(안 제11조), 제정안은 효과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기적인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세 법률안은 기본적인 추진체계는 유사하나, 고민정의원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외에 설명회·세미나·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방식을 활용하도록 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에 학부모·학생대표 등 다양한 교육주체를 명시하면서 교육의 중립성과 다양성이 확

보되도록 균형있게 구성하도록 한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추진체계 비교 >

구분	김문수 의원안	강경숙 의원안	고민정 의원안
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이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마다 수립 (추진 목표 및 실시계획,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 교육내용의 연구 ²⁸⁾ 등)		
시행계획	교육감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관계기관 협조	규정		
의견수렴	교육부장관·교육감이 공청회 실시		교육부장관 : 공청회·설명회·세미나 설문조사 등,
학교민주시민 교육위원회	교육부장관 소속, 15명 (고민정의원안은 15명 이내로 규정)		
위원 구성	학교 현장·연구 전문가, 시민단체 등		교원·학부모·전문가·법조·종교·언론· 문화·시민단체·학생 대표 등
구성 원칙	-		교육의 중립성·다양성 고려
임기	2년, 연임 가능 (고민정의원안은 한 차례 연임 가능)		

□ 다만, 안 제8조 후단은 교육감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의 의견수렴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안 제10조는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설명회·세미나·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의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28) 김문수·강경숙 의원안은 기본계획에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포함하였으나, 제정안은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으로 규정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인성교육진흥법」²⁹⁾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각각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행정안전부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기존 위원회와 연계·통합하거나 교육부의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내의 존속기한³⁰⁾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 관련 관계기관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 의견: 제7조제3항 및 제11조 삭제>

- 「정부조직법」에서 자문기관은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규정(제4조)
- 「행정기관위원회법」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연계·통합하거나, 부처 소속의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제7조, 제7조의2)

29) 「인성교육진흥법」 제8조(공청회등의 실시)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이하 이 조에서 “공청회등”이라 한다)으로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청회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5년 이내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함(제11조)

○ 이에,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신설보다는 교육부내 정책자문위원회 활용 등 우선 고려 필요

<시도교육청 의견>

○ (경기) 교육당사자인 학생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위원의 비중 추가

※ 제11조제3항제5호, 학생위원의 비중(전체 위원회위원의 10% 이내) 추가

마.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운영(안 제12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 제12조는 학교장의 학교민주시민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대학과 한국학교에서의 교육 등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2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 및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④ 「고등교육법」 제41조에 따른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과 및 교직과정을 포함한다) 등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 양성기관은 예비교원의 학교민주시민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는 소재국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 제정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학교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학교의 장이 교육대상

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을 계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대학 및 교원양성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학교의 경우 소재국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유형과 교육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 세 법률안은 학교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을 반영하고 학교 단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대학과 교원양성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본적인 운영체계는 유사함.

다만, 고민정 의원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교육과정 반영을 노력의무로 규정하고, 교원양성기관의 관련 과목 개설을 재량사항으로 두는 한편, 한국학교에 대해서는 소재국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계획·실시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한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운영 비교 >

구분	김문수 의원안	강경숙 의원안	고민정 의원안
교육과정 반영	교육부장관이 반영	교육부장관·교육감이 반영	교육부장관·교육감이 반영하도록 노력
학교별 계획	매년 교육계획 수립·실시		
학교 책임자	지정 가능	—	—

대학 관련 과목	개설 가능		
교원양성기관	관련 과목 개설 가능	필수 개설	관련 과목 개설 가능
한국학교	-	-	소재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계획·실시 가능

□ 안 제12조제1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김문수의원안과 강경숙의원안에서 교육과정 반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노력의무로 완화한 것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현행 교육과정 결정체계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고려³¹⁾³²⁾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안 제12조제2항은 학교의 장이 시행계획 및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을 계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별 여건과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 단위의 계획을 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학교는 이미 학교교육과정계획 등 각종 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별도의 계획 수립이 추가적인 행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31)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7. 20.>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신설 2021. 7. 20.>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종전 김문수의원안과 강경숙의원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교육과정 반영을 의무화하는 것이 현재의 교육과정 결정체계와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장의 별도 계획 수립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존 학교교육과정계획에 통합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인 운영 필요성과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인지, 기존 학교교육과정계획 등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제정안은 대학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과목 개설과 교원양성기관의 관련 과목 개설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한국학교도 소재국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을 계획·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한국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다만, 제정안 제2조는 대학과 한국학교를 모두 “학교”에 포함하고 있어, 학교의 장이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을 계획·운영하도록 의무화한 제2항이 이들 학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따라서 대학 및 한국학교에 대해서도 제2항의 일반적인 계획·운영 의무를 적용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각 학교의 자율에 맡기려는 것인지 조문 간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 관련 관련기관 의견 제출]

< 시도교육청 의견 >

- (경기·전남) 학교의 장의 계획 수립 조항(제2항) 삭제 필요
- (전남)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 권한이므로, 교육부장관·교육감에 대한 조항(제1항) 수정* 필요
 - *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민주시민 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교원단체 의견 >

- (전교조) 학교의 별도 계획 수립은 학교 현장의 행정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2항을 기존 교육과정 계획과 통합할 수 있도록 수정* 필요
 - * 학교의 장은 ... 학교교육과정계획 수립 시 이를 통합하여 반영할 수 있다.

바. 교원의 연수(안 제13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 제13조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의 교원에게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3조(교원의 연수 등)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의 교원에게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 제정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헌법적 가치, 민주적 토론, 사회참여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만큼 교원의 관련 지식과 수업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연수 근거를 두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김문수 의원안과 고민정 의원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강경숙 의원안은 교원이 일정시간 이상 관련 연수를 이수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교원의 연수 비교 >

구분	김문수 의원안	강경숙 의원안	고민정 의원안
연수 방식	교육부장관·교육감이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음	교원이 일정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가능	교육부장관·교육감이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음

□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연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순히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보다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연수를 직접 실시하는 근거만 둘 것인지, 교원이 관련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까지 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둘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 관련 관련기관 의견 제출]

<시도교육청 의견>

- (경기) 실질적인 연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구에 ‘지원’ 명시 필요
- ※ (제13조) … 학교민주시민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사. 부칙

1) 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제정안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음.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검토의견

- ☐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의 시행계획 수립, 학교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학교별 교육계획 수립 등 새로운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의 정비와 관계기관 및 학교 현장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부칙은 법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어, 법률안의 의결·공포 시기에 따라 실제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 따라서 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93